한-EU FTA 비준에 따르는 법률서비스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규안*

A Study on Influence of Korea-EU FTA Ratification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Gyu-An Lee*

요 약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EU FTA, which came to an agreement in April of 2007,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of 2011, thereby having been concluded the ratification. As for the procedure of opening a market in legal service according to settlement and ratification of Korea-EU FTA, Step 1 is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at home by EU member countries' law firms. Step 2 is made available for 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to jointly handle and distribute profits as for a case that is mixed the domestic law firm and the domestic & foreign laws. Step 3 is allowed EU member countries' law firm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with domestic law firm. This study researches into a change and influence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according to Korea-EU FTA ratification. Also, it researches into position and prospect that digital forensic evidence, which possesses the majority of legal evidences, takes up in the middle of court-oriented trials. The prediction of influence in digital evidence as professional proof upon judgment will led to being capable of coping with the opening of legal service market and of wisely preparing for the advance to domestic market by law firm of Anglo-American Law.

키워드

Korea-EU FTA, Digital Evidence, Digital Forensic, Forensic Science.
한-EU FTA. 디지털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학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leegyuan@hotmail.com)

접수일자 : 2011. 08. 27 심사(수정)일자 : 2011. 09. 30 게재확정일자 : 2011. 10. 12

Ⅰ. 서 론

EU(European Union)는 25개 회원국이 인구 4억 8천만명과 GDP 13조 4천억달러 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출국으로서는 중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4위에 머물러 있다. 한-EU FTA(Free Trade Agreement) 조약이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이 가시화 되었다.

최근 EU를 통한 수출입이 증가되고, 법률서비스 시장은 3단계를 거쳐 개방이 진행되는데 2016년 7월이 되면 EU회원국 로펌은 국내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세계 로펌의 1-4위를 차지하는 대형 로펌으로서 국내 로펌과의 경쟁과 서비스부분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률서비스 부분에서는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와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는 제외한다고 하였지만,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거나 국제규범이 경우에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

영미법계에서는 공판주의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미국 등에서 현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_EU FTA 조약 체결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포렌식 수사현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기업소송, 특허분쟁 등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의 전망과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써 미래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Ⅱ. 한-EU FTA 법률서비스 개방 분석

1. 한-EU FTA 법률서비스 개방 절차

2011. 5. 4.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서 한국 법률시장의 개방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EU FTA에 의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2011년 7월 이전에는 로펌은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로서 2013년 7월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되어 전면적인 법률시장의 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2].

이에 따라 잠정 발효일인 2011. 7. 1.부터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협상 초기에는 EU 측이 국내 법률시장의 즉시·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꾸준한 설득을 통하여 3단계로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입장이 관철되었다.

표 1. 법률시장의 개방 단계
Table 1. Open Stage of Legal Service

시 기	내 용
발효 직후	외국변호사·로펌의 국내 진출 허용
발효후 2년	사안별 업무제휴 허용
발효후 5년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한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국내 활동 외국 변호사 직명으로 통상협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Foreign Leagl Consultant(FLC)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를 사용하며, 원자격국어로 된 외국변호사 명칭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의 병기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대리, 법정변호 등 국내법사무 수행을 제외한 법률자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3].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이 가능하게 되고, 법률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의 로펌들은 국제적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등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신할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의 대책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법률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로펌 등 법률서비스 회사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국내 소송의 문제에 관하여 개입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국제시장의 개방되어 영역이 더 넓혀질 것이라는 것과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대형 로펌이 국내시장에 잠입하게 되므로 질적, 서비스적으로 약세라는 측면과 국내외 기업의 합병, 조정등에 관하여는 국제적인 로펌에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기회로 삼아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및 외국 환경의 이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에서 취업을 하여 법률시장의 국제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III. 한-EU 포렌식 업계 수사 동향 분석

1. 디지털 포렌식과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추출·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하고 법정에 채택되도록 하는 과학수사의 한 패러다임이다[4][5].

생산되는 정보의 90%가 디지털 데이터라는 보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의 기본이 디지털 증거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기업의 경우 워드작업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문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고 결재절차를 거친 후 발송되거나 저장되고, 지시사항이나 참고사항은 쪽지나 메신저의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또는 확산되게 된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 주요 혐의자의 행동과 범죄현장은 CCTV속에 저장되기도 하며, 범죄에 대한 예비활동 등으로 범죄현장을 미리 답사하였다면 운전 이동사항은 네비게이션 속에 저장되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이동사항은 교통카드의 정보를 통하여 분석하게 된다[6].

디지털 포렌식은 과학수사의 한 중심축으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법률적인 지원이 없이 판례나 유사한 법률로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기업의 합병, 특허권 다툼등에 있어서 증거의 수집과 제출은 자회사의 우위를 차지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회계자료 등은 관리와 보관, 무결성을 입증된 상태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직원의 내부사고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의 강압과 시인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개인의 권리가 날로 더 중요하게 보호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7].

이러한 모든 입증과정에 디지털 포렌식은 필요하게 된다.

나.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는 2008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복사와 열람으로 지원되던 것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동등하게 증거를 제시하여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개시제도라는 명칭으로 불리워 지다가 전자적인 증거(디지털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이-디스커버리'라는 명칭으로 연구와 재판에 도입이 시도 되고 있다[8].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디스커버리가 민·형사상의 재판과정에서 도입되어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유럽과 미국의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기업의 합병,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증거자료 등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영업비밀, 첨단기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인 비공지성과 비밀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현실적 잠재적으로 생산 판매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절차와 결과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전자화되어 보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적 증거는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재판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증거를 평소에 보관되거나 법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며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포렌식의 절차가 중요하고, 모든 과정이 전자적 증거개시로서 제출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사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평소에도 증거의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로 만들어진 증거는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보관하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Ⅳ. 한-EU FTA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대한 영향 연구

1. 영국의 증거개시제도

영국에서 증거개시제도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의무(Common Law Duty by Judges)였으나, 1996년 형사절차및수사법에 이를 명문화 하였고, 2003년 형사정의법(Criminal Justice Act)에 의하여 개정되고 실무규정에 의하여 보강되어 시행되고 있다. 증거개시제도를 인정한 것은 검찰과 피고인 간의 무기대등(Equality of Arms)을 달성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법정에서 공소유지의 근거로 삼을 증거들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나, 법정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미사용 자료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판례는 증거개시의 범위에 대하여 사안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증거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2가지 사례로 진행되는 증거에 대한 단서가 실제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그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식하고 있다. 미사용자료의 경우에도 공개를 위한 법적 요건 판단을 거쳐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미사용 자료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검찰에 불리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개하는 것이다[9].

그러나 소송 경제상 검찰에 불리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료이거나 오히려 피고인에 불리한 자료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

최초 검찰측 증거개시가 있은 후, 피고인이 검찰과 법원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만일 알리바이를 주장할 경우 정확한 알리바이의 내용(증인의 이름, 주소 등)을 개시하는 등 일정한 점에서 증거개시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측 답변서를 받아본 후 검찰에서는 개시되지 않은 자료 중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차 개시한다. 한편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이 답변서에서 주장한 것과 무관하다면 증거개시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차 증거개시 이후에도 재판이 종료할 때까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자료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는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부터 젱크법(Jenks Act)에 이르는 제정법과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판례법의 두가지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적법절차 조항 하에서 검사의 증거개시의무는 피고인과의 상호 증거개시의 관한 성문법 체계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적법절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며, 어떠한 성문법령의 뒷받침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증거개시제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미 연방의 판례 보다도 증거개시 범위를 넓게 확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막론하고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10].

그러므로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66조의 11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규정하여 증거개시의 상호화, 또는 상호증거개시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상대의 무기를 동시에 개방하게 하여 공판정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공판주의 이념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4. 로펌의 디지털 증거 강화 정책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등은 해외 로펌들의 국내시장 집입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디지털 소송전에 대비하여 인력과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산업보안, 정보보안, 포렌식 등 전문분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IT대응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과 정보통신, IT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도 IT 관련 전문변호사들과 외부 영입을 통하여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디지털 소송에 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채택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인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못지 않는 행정소송의 분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유럽과 미주에서 도입된 전자증거개시제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법률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한 포렌식 수사의 방향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법정에서 채택하기 위한 국제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한-EU 비준에 따른 시장 변화의 시작이며, 한-미 FTA 비준을 대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5. 디지털 포렌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컴퓨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입법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사용하거나 그 증거로써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컴퓨터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주된 이유는 컴퓨터 장치 그 자체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을 범죄 혐의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용량이 대형화되고 이동성이 부여되는 관계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수사관은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거나, 디지털 증거가 저장된 장소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짧게는 수 주일에서 수 개월이 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며칠 만에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등 절차상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한-EU FTA가 체결되어 영국의 법률서비스가 국내의 기업합병, 저작권 분쟁, 관계 업종에서 내부사고 및 비리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문가, 신뢰할수 있는 프로그램과 분석도구, 절차와 규정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국내외법에서 판시하고 있으며, 국내의 포렌식 동향은 신속한 수사와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일이 수 일 또는 수 주내에 처리되는데 비하여 영국과 미국에서는 재판의 모든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서 판결을 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무결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에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11].

이제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분야가 아니라, 기업에서는 자사의 비밀과 사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특히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로펌등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적법절차와 규정에 준수하여 무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민사절차에서는 직원들의 비리와 영업비밀 유출, 기타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이버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자사에서는 해킹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기업은 수십 또는 수백 억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여 재판에서 그 실익을 다툼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점차 영미법계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제출과 입증을 강

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례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에서 국내의 로펌을 비롯한 법률지원은 세계적인 대형 로펌에 의하여 패소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연구와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법률시장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V. 결 론

한-EU FTA가 체결 됨에 따라 법률 서비스도 개방을 하게 된다. 법률서비스 개방화에 따른 특징중의 하나는 디지털 증거의 채택과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디스커버리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률시장에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공판전 개시가 확산될 것이다.

영미법계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많은 연구와 재판결과가 존재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선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판례와 연구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인증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법과 제도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조약 체결에 따를 법률시장의 개방단계와 이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포렌식은 지금보다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며, 기업합병, 지적재산권, 내부사고 등에서 혐의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공판중에 사용하는 것이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된 방식은 아니지만 활용도는 증가할 것이다. 향후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연구와 공판에 활용하는 방안은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다.

참고 문헌

[1] “법률시장, 7월부터 사실상 전면개방”, 경향신문, 2011. 5. 11.
[2] “한-EU FTA 7월 발효, 빗장 풀리는 법률시장”, 서울경제, 2011. 5. 17.
[3] “법률시장 무한경쟁시대“, 세계일보, 2011. 5. 2.
[4] 이규안,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3권, 제4호, pp. 204-209, 2008.
[5] 이규안, 박대우, “카지노 횡령사건 분석과 포렌식 수사기술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pp. 105-110, 2011.
[6] 이광열외, “현행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한국정보보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81-91, 2008.
[7] 최재민외, “포렌식 어카운팅 기술동향“, 한국정보보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29-40, 2008.
[8] 최득신, “디지털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인터넷법률 제45호, pp. 152-178, 2009.
[9] 김성만, “법조 전문화의 현황과 제고 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121호, pp. 636-647, 2010.
[10] 배성범, “미국증거개시제도의 쟁점연구”, 법무연수원 연구자료, pp. 35, 2006.
[11] 이규안외,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GS인터비젼, pp. 17-20, 2011.

저자 소개

이규안(Gyu-An Lee)

2002년 한국방송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공학사)
2006년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정보통신융합학과 졸업(공학석사)
2010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졸업(공학박사)
2010년~2011년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992년 ~현재 검찰청, IT전문수사관
※ 관심분야 : 디지털포렌식, 첨단범죄수사. 모바일포렌식